

세무 및 무역 뉴스

2021년 12월



01. 개인소득세 (“PIT”)

- 베트남에 상시 거주자가 있지만 실제로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주상태
- 기부금에 대한 PIT 처리
- 실직수당, 토직금
- “Three-in-place”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현금수당

02. 조세관리 (“Tax Administration”)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하며 CIT 인센티브를 받은 중속공장에 대한 CIT 신고, 배분 및 납부
- 제92/2021/ND-CP 호 시행령에 따라 합병된 회사에 대한 CIT 감면 적용
- 회사의 회계연도가 역년과 다를 경우 제92/2021/ND-CP 호 시행령에 따라 CIT 감면에 대한 규정

03. 법인세 (“CIT”)

- COVID-19 영향으로 운영이 임시 중단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 전자지갑 (E-wallets) 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비용
- 운영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실직근로자에게 지급된 미사용 월차에 대한 급여비용
- 베트남에서 일을 위해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비용
- 기한 전 계약 종료로 인한 환불 불가 보증금

04. 간접세 / 부가가치세 및 특별판매세 (“VAT” & “SST”)

- 연구, 생산 및 교육 목적으로 수입된 자동차에는 특별판매세 (“Special Sales Tax – SST”)가 부과되지 않음

05. 외국인 계약자세 (“FCWT”)

- 게임 라이선스에 대한 FCWT
- 보세 창고에서 상품 판매에 대한 FCWT
- 외국인계약자가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운송되는 거리에 대하여 상품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FCWT
- 외국 기업에게 가공을 위해 내국 수입 물품은 FCWT가 부과되지 않음

06. 무역 및 관세

- 여러 선적 건에 대한 추가 로열티 신고를 단일 수정 신고로 가능
- 수입 권리에 따른 이전에 수입되었던 재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 환급
- 2022년 1월 1일, RCEP 협정 발효
- 기업의 자회사 간에 이전된 수출물품 제조용 원자재는 수입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님
- 상품 라벨에 대한 신규 규정(2022년 2월 15일부터 적용)
- 세금, 인보이스 및 관세 등의 행정 제재에 관한 여러 조항을 보완하는 2021년 11월 16일 제102/2021/ND-CP호 시행령
- 세금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는 제125호를 보완하는 2021년 11월 16일 제102/2021/ND-CP호 시행령

개인소득세 ("PIT")

신규 규정

베트남에 상시 거주자가 있지만 실제로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주상태

베트남에 상시 거주자가 있지만 실제로 베트남에서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주상태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외국인이 한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베트남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고정 세율로 PIT를 신고한다. 베트남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가 PIT를 원천징수하고 누진세율로 신고했으면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세율로 조정해야 한다;
- 외국인이 타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베트남 거주자로 간주되며, 누진세율로 PIT를 신고한다. 외국인이 베트남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PIT를 신고할 책임이 있다.
- 외국인이 베트남과 한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제2조 4항에 따라 거주상태를 결정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12월 6일 제19320/CTBDU-TTHT호 OL)

지침 문서

1. 기부금에 대한 PIT 처리

COVID-19 기간 동안 근로자가 호치민 시민 및 "어린이를 위한 컴퓨터와 인터넷"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2일의 급여를 기부한 경우 재무부의 2013년 8월 15일 제 111/2013/TT-BTC호 시행규칙의 제9조 3항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부금이 PIT 과세소득에 제외된다.

2. 실직수당, 퇴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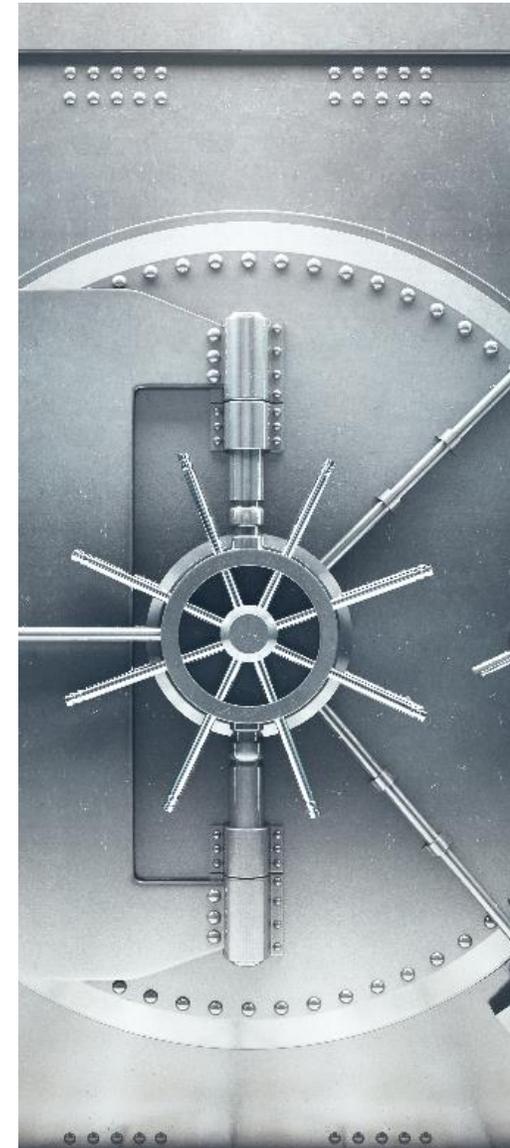
- 퇴직금, 실업수당 및 노동법 및 사회보험에 따른 기타 수당은 PIT 과세소득에 제외된다;
- 근로계약 종료 시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회사가 누진세율로 PIT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근로계약을 종료한후에 추가 VND 2백만동 또는 그 이상의 각 지급금의 경우 회사가 10% 세율로 PIT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12월 6일 제19296/CTBDU-TTHT호 OL)

"Three-in-place" 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현금수당

Covid-19 기간 동안 회사가 'Three-in-place' 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현금수당을 급여와 동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이 현금이익으로 간주되며 PIT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11월 22일 제18347/CTBDU-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지침문서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하며 CIT 인센티브를 받은 중속공장에 대한 CIT 신고, 배분 및 납부

기업은 본사와 같은 지역에 1개 공장이 있으며 타 지역에 2개 공장이 있다. 모든 공장이 2022년부터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으면 2022년 1월 1일부터 타 지역에 소재한 중속 공장에 대해 CIT 신고, 확정, 분배 및 납부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 타 지역에 소재한 중속공장에 대한 CIT 배분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제 80/2021/TT-BTC 호 시행규칙의 제17조, 제2.c항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 공장이 소재하는 각 지방에 배분된 납부 CIT 세액은 기업의 생산 및 운영 활동에 대한 CIT 총납부액에 기업의 총 비용에 각 중속 공장별 비용의 비율 (%) 을 (CIT 인센티브 적용된 비용을 제외) 곱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 중에서:
 - ✓ 배분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비용은 과세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다;
 - ✓ 기업의 생산 및 운영 활동에 대한 CIT 납부액은 CIT 인센티브 적용을 받은 CIT 금액을 제외한다.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중속공장에 대한 CIT 잠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제 80/2021/TT-BT 호 시행규칙의 제 17 조, 제 3.c 항에 따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 ✓ CIT 잠정 납부: 기업은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CIT 인센티브를 받은 지점이 소재한 지역을 포함) 중속공장이 소재한 각 지역에 CIT 납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분기별 CIT 잠정 납부액을 계산해야 한다.
- ✓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 사업활동에 대한 CIT 확정신고: 기업이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 사업활동에 대한 CIT 납부액을 계산하여 규정양식으로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 지점이 소재한 지방의 세무국에 신고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1월 15일 제/46423/CTHN-TTHT 호 OL)

제92/2021/ND-CP 호 시행령에 따라 합병된 회사에 대한 CIT 감면 적용

A사가 B사에 합병된 경우 B사는 합병결정서가 나올 때까지 세무국에 세금정산 할 책임이 있다. (규정에 따라 세금 정산이 면제되는 경우 제외). B사가 정부의 2021년 10월 27일 제92/2021/ND-CP 호 시행령에 따라 CIT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경우).

(Bac Ninh 세무국의 2021년 12월 8일 제/4172/CTBNI-TTHT 호 OL)

회사의 회계연도가 역년과 다를 경우 제 92/2021/ND-CP 호 시행령에 따라 CIT 감면에 대한 규정

회사의 과세연도가 역년과 다를 경우 2021년에 법인세 30% 감면은 회사의 과세연도로 적용된다.

(Binh Duong 의 세무국 2021년 11월 26일 제/18850/CTBDU-TTHT 호 OL)



법인소득세



지침 문서

COVID-19 영향으로 운영이 임시 중단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시장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2020년 과세연도에 9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고정자산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생산 및 영업활동에 투입한 경우 계절적 생산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CIT상 공제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부의 제 96/2015/TT-BTC 호 시행규칙의 제4조, 제2항, 2.2점에 따라 수행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11월 18일 제17991/CTBDU-TTHT호 OL

(재무부의 2020년 10월 09일 제12452/BTC-TCT호 OL와 동일한 견해를 제공한다)

전자지갑 (E-wallets) 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비용

회사가 근로자의 전자지갑을 통해 임금 및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재무부의 제 96/2015/TT-BTC호 시행규칙의 제4.1조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며 제4.2조에 명시된 비공제 비용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CIT산출목적상 공제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1월 23일 제48928/CTHN-TTHT 호 OL)

운영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회계상 고정자산을 기록한 날로 부터 (당월의 일수에 따름) 감가상각 처리를 시작한다.

감가상각비는 회사의 생산 및 사업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CIT산출목적상 비공제 비용으로 처리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11월 18일 제17991/CTBDU-TTHT호 OL)

실직근로자에게 지급된 미사용 월차에 대한 급여비용

회사가 국회의 2019년 11월 20일 제45/2019/QH14 호 노동법에 규정에 따라 퇴직 또는 실직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재무부의 2015년 6월 22일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의 제4.1조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며, 본 시행령의 제4.2조 및 재무부의 2018년 12월 8일 제25/2018/TT-BTC 호 시행규칙의 제3.2조에 명시된 비공제 비용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CIT목적으로 공제될 수 있다

(Bac Ninh 세무국의 2021년 12월 08일 제4176/CTBNI-TTHT 호 OL)

베트남에서 일을 위해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비용

일본 모회사와 베트남 자회사 간의 주재원 파견 계약서상 베트남 자회사가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및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PIT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재무부의 2015년 6월 22일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의 제 4 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며 CIT목적으로 공제될 수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1월 23일 제48930/CTHN-TTHT 호 OL)

기한 전 계약 종료로 인한 환불 불가 보증금

회사가 기한 전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재무부의 2015년 6월 22일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의 제4조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CIT목적으로 공제될 수 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11월 26일 제18852/CTBDU-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지침문서

연구, 생산 및 교육 목적으로 수입된 자동차에는 특별판매세 ("Special Sales Tax - SST")가 부과되지 않음

산업무역부 ("MOIT")의 2020년 11월 30일 제1390/XNK-CN호 OL 및 공안부 ("MPS")의 2020년 12월 22일 제7187/ANKT-P6 OL에 따르면 기업이 연구, 생산 및 교육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수입하여 실제 통행을 위해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입 자동차에는 SST가 부과되지 않는다.

회사가 자동차를 수입한 후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즉, 회사의 연구, 생산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통에 통행을 위해 등록한 경우) 수출입에 대한 조세행정, 수출입세, 관세 심사 등에 대한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관세당국에 SS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회사가 SST를 납부하기 위해 수입 신고하는 관세당국에 최초 수입 목적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행정법 및 관련 지침문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재무부의 2021년 11월 11일 제12898/BTC-TCHQ 호 OL)



간접세 (VAT & SST)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게임 라이선스에 대한 FCWT

외국인계약자는 베트남 회사와 계약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게임 라이선스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FCWT가 부과된다.

외국인계약자의 상기 소득은 로열티 소득으로 간주되며 FCWT 세율이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VAT: 적용되지 않음;
- CIT: 10%.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1월 24일 제49085/CTHN-TTHT호 OL)

보세 창고에서 상품 판매에 대한 FCWT

베트남 회사가 외국인계약자와 체결한 물품 판매 계약에 따라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받는다(물품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어 보세창고로 이동됨).

이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보세창고를 사용하여 상품을 유통하는 외국 단체 또는 개인은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FCWT를 납부해야 한다.

(Vinh Long성 세무국의 2021년 4월 26일 제478/CTVLO-TTHT호 OL)

외국인계약자가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운송되는 거리에 대하여 상품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FCWT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수반 서비스 없이 베트남 국경검문소까지 배송하는 형태로 베트남 회사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과 관련 모든 책임, 비용, 위험이 국경검문소에서 베트남 회사에 완전히 이전된다.

이 경우에 외국계약자가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운송되는 상품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가치와 보험료를 포함한 인보이스로 베트남 회사에 청구하면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Hung Yen 세무국의 2021년 11월 23일 제 5616/CTHYE-TTHT호 OL)

외국 기업에게 가공을 위해 내국 수입 물품은 FCWT가 부과되지 않음

제4자 매매계약에 따라 A사(외국 회사)가 B사(베트남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C사(외국 회사)에게 상품을 판매한다. C사의 지정으로 B사가 D사(베트남 회사)에 상품을 납품한다

D사가 지정된 납품측인 B사로 부터 무상사급으로 상품을 내국 수입한 후 가공품을 C사에 수출하는 경우 C사가 제 103/2014/TT-BTC호 시행규칙 제 1조 2항에 의한 규정에 따라 FCWT이 부과된 대상이 아니다.

(Hung Yen 세무국의 2021년 9월 21일 제4348/CTHYE-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여러 선적 건에 대한 추가 로열티 신고를 단일 수정 신고로 가능

제 60/2019/TT-BTC 호 시행 규칙 제8조 1항, 제39/2015/TT-BTC호 시행 규칙 제16조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 당시 로열티 수수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 신고서에 그러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수입자는 제06/2021/TT-BTC호 시행 규칙 제 7조 3항 b점에 규정된 로열티 수수료 추가 신고 마감일을 준수해야 한다.

여러 수입 상품/신고에 대한 추가 로열티 수수료를 신고하기 위해 수입자는 아래와 같이 수행할 수 있다.

- 하나의 수정 세관 신고서상 로열티 수수료를 1회 신고한다.
- 수정 신고서와 관련된 수입 신고 목록을 첨부한다.
- 로열티 수수료가 부과되는 모든 수입 물품에 로열티 수수료를 배분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11월 10일 제5320/TCHQ-TXNK호 OL)

수입 권리에 따른 이전에 수입되었던 재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 환급

제 107/2016/QH13 호 제 19조에 따라 기업은 이전에 수입 권리에 따라 수입되었던 재수출 상품에 대해 수출 관세 면제 및 수입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수출되는 상품이 베트남에서 사용, 생산 또는 가공되지 않아야 한다.

관세총국은 기업이 수출입 권리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결정에 대한 추가 지침을 산업무역부에 문의하도록 요청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11월 15일 제5389/TCHQ-TXNK호 OL).

2022년 1월 1일, RCEP 협정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20년 11월 15일에 체결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체결한 협정이다.

(산업통상부의 2021년 11월 16일 제 7268/BCT-DB호 OL).

기업의 자회사 간에 이전된 수출물품 제조용 원자재는 수입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님

제 18/2021/ND-CP호 시행령 제1조 6항 (2021년 4월 25일부터 유효됨)에 따라 회사가 수출 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된 모든 원자재를 자본금의 5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가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출 물품 생산을 하는 자회사에 공급하기 위해 다른 자회사가 수입한 원자재는 수입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회사들의 자본금 소유자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이기 때문이다.

(관세총국의 2021년 11월 17일 제5419/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상품 라벨에 대한 신규 규정(2022년 2월 15일부터 적용)

2021년 12월 9일에 베트남 정부는 2017년 4월 14일 상품 라벨에 관한 제43/2017/ND-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제111/2021/ND-CP호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해당 규정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보세창고에 수입·보관된 물품의 라벨링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 물품에 대한 라벨링을 관리한다;
- 베트남 시장에서 소비되는 수입 물품의 경우 통관 시 본래의 라벨에 다음 정보가 모두 있어야 한다. (외국어로 기재 가능): 물품명 및 원산지, 제조업체명이나 약칭 또는 상품을 책임지는 해외 법인;
-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물품 라벨에 표기된 원산지는 제조/가공의 마지막 단계가 수행된 국가이다.
- 부록 I, IV 및 V를 대체한다.

본 시행령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유효하다.

(정부의 2021년 12월 9일 제111/2021/ND-CP 11/2021호 시행령)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세금, 인보이스 및 관세 등의 행정 제재에 관한 여러 조항을 보완하는 2021년 11월 16일 제102/2021/ND-CP호 시행령

배경

정부는 2021년 11월 16일 제102/2021/ND-CP호 시행령을 발효하여 세금, 관세, 인보이스 등에 대한 행정 제재에 관한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보완했다.("제 102호 시행령"). 본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주목할 만한 내용:

1. 세금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 위반 제재를 규정하는 제125/2020/ND-CP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보완한다("제125호 시행령"):

- 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조항의 수정 및 보완
- 연체이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추가
- 세금 및 세금계산서의 행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및 감면

2. 관세에 대한 행정 위반 제재를 규정하는 제128/2020/ND-CP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보완한다("제128호 시행령"):

- 반복되는 행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의 원칙
- 행정 제재 기한
- 사후 조치 및 사후 조치 실행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수정 및 보완된 내용

제102호 시행령

제125호 시행령

무역 및 관세



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 위반	- 제재 기간은 2년이다.	- 제재 기간은 1년이다.
세금계산서를 판매, 제공 행위	-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VND 20,000,000~VND 50,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i) 아직 발행되지 않은 인쇄된 세금계산서를 제공하는 행위 및 (ii) 다른 조직, 개인에게 발행하기 위해 주문한 고객의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세무 당국에서 구매했지만 아직 발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VND 20,000,000 ~ VND 50,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행	- 규정에 따라 불충분한 정보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VND 4,000,000 ~ VND 8,000,00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보완한다.	- 규정 없음
세금계산서 분실, 소각 또는 손상	- 발행되었지만 세금이 아직 신고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분실, 소각 또는 손상에 대해 VND 4,000,000 ~ VND 8,000,00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보완한다. 관련 당사자는 세금계산서의 손실, 소각 또는 손상에 대한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 세금이 납부되었거나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및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분실, 소각 또는 손상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이 조의 1, 2,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또는 보관 중에 이미 세금이 신고되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분실, 소각 또는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VND 5,000,000 ~ VND 10,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분실, 소각 또는 훼손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사고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이 조의 1, 2,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또는 보관 중에 이미 세금이 신고, 납부되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분실, 소각 또는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VND 5,000,000 ~ VND 10,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이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감면 및 면제의 고려 및 결정 기간 동안	- 과태료 면제 고려 및 결정 기간 동안
세금 및 세금계산서의 행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면 및 면제	-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규 제 77조 및 여러 조항을 보완하는 제1조 38항 및 본 시행령의 제43조 2, 3, 4, 5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 및 세금계산서의 행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및 감면의 경우 - 불가항력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손해 재산 및 물품의 가치, 보험가액, 보상가액 을 증명하는 문서에 관한 규정	- 조세 행정법규 제3조 27항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세금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 세금 및 세금계산서의 행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위한 서류를 상세히 규정한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신규 규정 (cont.)

관세 관련 행정 제재에 관한 제128/2020/ND-CP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2021년 11월 16일 제102/2021/ND-CP호 시행령

수정 및 보완된 내용

제102호 시행령

제128호 시행령

반복되는 관세 행정 위반 제재 원칙(제2a조)

- 반복적 행정 위반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은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는다.
- 신고서/서류 위반이 동시에 여러번 적발되고 처리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1회성 위반으로 처리되나 행정적 제재가 가중되어 부과될 것이다.

- 규정 없음

관세 행정 위반 제재 기한(제4조)

행정 위반 제재 기한은 2012년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령 제 6조 및 해당 법령의 여러 조항을 보완하는 법령 제 1조 4항에 따른다.

- 행정 위반 제재 기한은 2012년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령 제6조에 따라 수행된다.

제재 및 조치(제5조)

- 과태료를 부과 시 감경 사유로 인해 각 상황에 따라 과태료 범위 내 평균 과태료 수준의 10% 감면할 수 있으며, 과태료 최소 수준으로 제한된다.
- 가중 사유로 인해 각 상황에 따라 과태료 범위 내 평균 과태료 수준의 10%씩 증가되며 과태료 최대 수준으로 제한된다.
- 감경 사유 및 가중 사유가 모두 있는 경우 감경 1건이 가중 1건을 상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규정 없음

조치 수행(제33a조)

- 베트남 영토에서 상품을 강제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당국의 감독 및 통지에 대한 시행 및 절차에 대한 규정
- 유해한 재화 및 물품의 폐기 조치; 제품의 포장을 변경, 불법적으로 소비되거나 폐기된 물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 반환; 탈세 금액, 면제, 감면, 환급 또는 미징수 세액을 납부하도록 조치의 시행에 대한 규정

- 규정 없음



무역 및 관세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ipark@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VIETNAM**

Making an impact since 1991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